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38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인호, 김제리, 김호평,  
박순규, 송아량, 우형찬,  
이승미, 정지권, 정진술,  
황인구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진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야간·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정된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정 및 지원)에 따라 시가 지정한 야간·휴일의원에서 야간·휴일 등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발생
  - 본 조례안에서 제4조를 제외한 다른 조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 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다. 추계기간 : 5년

#### 라. 방법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현재도 추진중이나 본 조례안은 그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진료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비용 산출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및 조례제정안 상 운영시간 비교

구 분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제정조례안	비 고
평일 야간	19:00~22:00 또는 23:00	19:00~익일 06:00	8시간(7시간) 증가
토요일	15:00~18:00	15:00~24:00	6시간 증가
공휴일	09:00~18:00	24시간(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06:00~ 24:00)	15시간 증가
' 20년 예산액	25억원	-	

- 본 조례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44개 중 병원급을 제외한 의원급 34개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진료희망자는 증감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원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진료건수 당 정액 지원방식으로 하되 지원단가는 평일단가 (22:00~23:00)인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하여 진료대상자 1인당 총 10,500원으로 지원단가 산출

- 단, 2018년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추진실적으로 볼 때 동대문구의 실적이 도봉구의 37배임. 지역편차와 야간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 보전 등을 고려한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갈 경우 평균인건비의 25%지원시 연간 2,244,000천원, 50%지원시 연간 4,488,000천원 추가소요 가능(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8.4)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천3백만원, 약사는 6백만원, 간호사는 3백만원임)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1건당 지원금액 상세(2019년 기준)

구 분	운영시간	의료기관	약국
평일 야간	19:00~22:00	6,000	1,000
	22:00~23:00	9,000	1,500
토요일	15:00~18:00	6,000	1,000
공휴일	09:00~18:00	6,000	1,000

- 진료시간을 본 조례안과 같이 확대시 증가되는 진료환자 수는 추정이 곤란하나 기존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진료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410,737명으로 진료환자 수 추정 (2018년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친 사업실적은 840,945명이나 이중 진료환자 수는 410,737명)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21,563,695천원(연평균 4,312,73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 지정 야간 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안 제4조)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소계(b)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총 비용(b-a)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 2. 세부추계내역

-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 21,563,69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 지원인원 수 × 지원단가  
= 410,737명 × 10,500원  
= 4,312,739천원